

주요 선거일정

후보자등록 신청

3.26.(목)~3.27.(금)
오전 9시~오후 6시

거소투표신고 기간

- 대상: 병원·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
- 투표방법: 거소에서 우편투표
- 신고기간: 3월 24일(화)~28(토)까지, 5일간
- 신고방법: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의 장에게 3월 28일(토)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

선거운동 기간

4.2.(목)~4.14.(화)

투표안내문 발송

(선거공보 동봉)
4.5.(월)까지

사전투표

- 대상: 4월 15일(수)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
- 투표기간: 4월 10일(금)~4월 11일(토) 오전 6시~오후 6시
- 투표장소: 별도 신고 없이 전국 3,500여 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
- 투표절차: 내지 참조

선거일 투표

- 투표일시: 4월 15일(수) 오전 6시~오후 6시
- 투표장소: 지정된 투표소
- ※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, 투표소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음
- 투표절차: 내지 참조



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선거전문채널
한국선거방송
KT올레TV ch.273, 티브로드 ch.205

www.nec.go.kr

(우)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/ 02) 503-1114
선거법 질의 및 위반행위 신고·제보 : **국번없이 1390**

아름다운 선거
행복한 대한민국

제21대 국회의원선거
2020.4.1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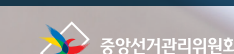


“내가 만드는 대한민국
투표로 시작됩니다”

제21대 국회의원선거
선거일 투표
4월 15일(수)
오전 6시~오후 6시

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? 사전투표하세요!
사전투표 4월 10일(금)~11일(토), 오전 6시~오후 6시
[기]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을 방문하시면
후보자·정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선거권 연령: 18세(2002.4.16. 이전 출생자) 이상



4월 15일(수)
제21대 국회의원선거
알아보기

선거권이 있는 사람

- “18세(2002.4.16. 이전 출생자) 이상”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
- 주민등록자: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재외국민: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*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* 3개월 미만의 경우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

투표용지 2장

-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"흰색"
-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"연두색"



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, 선거권 확대 등 개정 선거법 안내는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 참조

제21대 국회의원선거
2020.4.15.



“내가 만드는 대한민국
투표로 시작됩니다”



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선거전문채널



KT올레TV ch.273, 티브로드 ch.205

www.nec.go.kr

(우)13809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/ 02) 503-1114
선거법 질의 및 위반행위 신고·제보 : **국번없이 1390**

선거일 투표

제21대
국회의원선거

4월 15일(수)
오전 6시~오후 6시

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? **사전투표**하세요!

사전 투표 4월 10일(금)~11일(토), 오전 6시~오후 6시

[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] 누리집(nec.go.kr)을 방문하시면
후보자·정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선거권 연령: 18세(2002.4.16. 이전 출생자) 이상



4월 15일(수)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아보기

선거권이 있는 사람


"18세(2002.4.16. 이전 출생자) 이상"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


- 주민등록자: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재외국민: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* 계속하여 올라 있고

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* 3개월 미만의 경우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

투표용지 2장

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"흰색" 

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"연두색" 



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, 선거권 확대 등 개정 선거법 안내는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 참조



주요 선거일정

후보자등록 신청

3.26.(목)~3.27.(금)
오전 9시~오후 6시

투표안내문 발송

(선거공보 동봉)
4.5.(월)까지

선거일 투표

- 투표일시: 4월 15일(수)
오전 6시~오후 6시
- 투표장소: 지정된 투표소
※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,
투표소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음
- 투표절차: 내지 참조

거소투표신고 기간

- 대상: 병원·요양소에 머물거나
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
- 투표방법: 거소에서 우편투표
- 신고기간: 3월 24일(화)~28(토)까지, 5일간
- 신고방법: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
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의
장에게 3월 28일(토) 오후 6시까지
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

선거운동 기간

4.2.(목)~4.14.(화)

사전투표

- 대상: 4월 15일(수)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
- 투표기간: 4월 10일(금)~4월 11일(토)
오전 6시~오후 6시
- 투표장소: 별도 신고 없이 전국 3,500여 개
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
- 투표절차: 내지 참조

후보자 정보, 이렇게 확인하세요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(nec.go.kr) 방문하기

- 정당·후보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

선거벽보 살펴보기

- 소속 정당명(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), 후보자 사진, 성명, 기호, 경력, 학력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.
-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등의 장소에 4.3.(금)까지 게시됩니다.

선거공보 꼼꼼히 확인하기

-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.
-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의 경우, 두 번째 면의 '후보자정보공개자료'에 후보자의 학력·경력 등 인적사항과 재산 및 병역·납세·전과기록 등의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
- 모든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4.5.(일)까지 발송됩니다.

정책과 공약, 놓치지 마세요.

정책·공약알리미(policy.nec.go.kr) 확인하기

- 정당의 10대 정책,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신문고 민원, 언론기사 빅데이터에서 도출된 정책공약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유권자가 희망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후보자토론회 시청하기

-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·검증하여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후보자 토론주간(4.2.~4.9.)에 집중 개최되며 방송사와 시간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(debate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
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tv.debates.go.kr / 유튜브 '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'



사전투표

4.10.(금)~4.11.(토) 오전 6시~오후 6시

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안내·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.

투표절차

○ 관내선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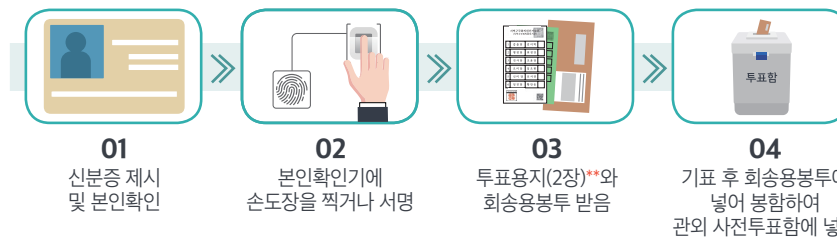
해당 구·시·군위원회 관할구역*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



*하나의 구·시·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

○ 관외선거인

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



투표장소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
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

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

선거일 투표

4.15.(수) 오전 6시~오후 6시

투표절차



**재·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일부 지역은 재·보궐선거 투표용지 추가 교부 해당되는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
투표장소

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
주의하세요!

- 선거인은 선거마다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투표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,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.
-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.

좋은 정치를 지향하고, 국민과 함께하며,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

누구나 불편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.

-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.(해당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)
-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체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.

- 사전투표 기간(4.10.~4.11.)과 선거일(4.15.)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(4.8.)부터 선거일 전 3일(4.12.)까지 인터넷 누리집·사보·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- ※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
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앞장서겠습니다.

-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투표함 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, 투표함 이송 시에는 정당·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.
- 국민 누구에게나 개표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후보자, 배우자, 정당·후보자가 선정한 사람,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개표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(3.21.~25.)을 통해 개표 과정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